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면제합니다.

1. 상 호 명: (주)원익큐브
2. 대 표 자: 오영신
3. 주 소: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파재로 640
4. 대상 건축자재: [] 접착제, [] 페인트, [] 실란트, [] 퍼티, [] 벽지,
[] 바닥재, [] 기타()
5. 면제 제품명: MSR1000
6. 유효기간: 2020년 07월 05일
7. 면제 사유: 오염물질 방출시험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(Doctor-Sil M7)과 화학적조성 및 제조공정이 동일함

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

